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142 |
|----------|------|

제출일자: 2019. 10. 14.

제출자: 달성군



##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제4항)
- 나.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부분 개정(안 제3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2조의8 제1항  
「지방자치법」제22조

나. 기타사항

- (1)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27. ~ 9. 16.(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중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를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제한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7조(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br>1. ~4. (생략)<br>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br>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교부결정) ①-----<br>-----<br>-----<br>-----<br>1. ~4. (현행과 같음)<br><삭제><br><삭제>                    |
| 제20조(교부방법) ① 생략<br>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지방보조금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교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br><삭제>                                                                      |
| 제23조(실적보고) ①~③ 생략<br>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23조(실적보고) ①~③ (현행과 같음)<br><삭제>                                                                    |
|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br>-----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br>-----<br>-----범 위 에 서-----<br>-----제한할 수 있다. |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

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